

고용유지지원금 회수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기지급분 회수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1. 9. 8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 : 감원방지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1. 9. 8. ~ 2021. 9. 22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주연(Tel. 02-580-497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감원방지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1. 9. 8. ~ 2021. 9. 22.)

연번	사업장명	사업장 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1	노블디자인○ 주○형	887-73- 001**-0	감원방지기간 미준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통지	2,680,000원	2,680,00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(2회)	1차 서울 강남대로6길 이하생략 2차 강원 강릉시 성덕포남로 39 이하생략